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4. 22 선고 2020가단1053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용환

피 고 B

변론 종결 2021. 2. 25.

판결 선고 2021. 4. 22.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3 지분에 관하여 2020. 4.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3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4. 17. 접수 제17382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구 E은행)은 2017. 1. 16. C에게 700만 원을 이율 연 25.9%, 대출기간을 60개월(연체시 기한의 이익 상실)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8. 12. 28. 위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며 C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위 양수금 채권으로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7. 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전72062호로 '6,516,913원 및 그 중 5,422,402원에 대하여 2019.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9%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9. 7. 31. 확정되었다.

다. 주식회사 F(구 주식회사 G)은 2017. 1. 13. C에게 5,000만 원을 이율 27.5%(연체이자율 27.9%), 변제기 2022. 1. 13.(연체시 기한의 이익 상실)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9. 5. 30. 위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며 C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양수금 채권으로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전116020호로 '47,812,237원 및 그 중 40,366,454원에 대하여 2019.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9%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9. 12. 31. 확정되었다.

마.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2/3 지분은 C이, 1/3 지분은 피고(C의 처)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C은 2020. 4. 16.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위 2/3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4. 17. 피고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C이 소유한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사도 추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채무자 C에 대한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되고,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2/3 지분전부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C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3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선의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실상 피고가 C의 원고 외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조건으로 이를 매매대금으로 하여 그의 지분을 양수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증여의 형식을 취한 것이고, 당시 피고는 C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선의의 항변을 한다.

그러나 피고와 C이 서로 부부지간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3 지분이 C이 소유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인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남편인 C의 지분을 전부 이전받음으로써 C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다는 사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이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 또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증여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권홍

목 록

1. 창원시 마산합포구 H 대 92.1㎡
2. 위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지붕 2층 보일러실, 대피소, 주택
지하(보일러실, 대피소) 58.52㎡
1층(주택) 52.725㎡
2층(주택) 52.725㎡. 끝.